

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신정호 위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번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17일 제290회 정례회 우리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, 상위법의 규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번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○ 상위법인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교육을 의무교육과 임의교육으로 구분하고 있고, 임의교육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에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○ 이에 개정조례안 번안을 통해, 의무교육인 연수교육에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 시장이

교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
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
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